

의안번호	2205996
의 퇴 인	김선교의원
회 답 일	2025.1.15.
추계번호	24D56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의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하고,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승계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게 수송시설 이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602억원(연평균 920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보훈병원 의료지원	2,579	2,474	2,375	2,282	2,195	11,906	2,381
고엽제후유의증수당	23,939	50,091	78,812	110,370	145,250	408,462	81,692
수송시설 이용지원	7,828	7,896	7,966	8,036	8,106	39,832	7,966
합계	34,346	60,461	89,153	120,688	155,551	460,200	92,04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제1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 한다)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함. 이 경우 그 진료비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 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 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음(제11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의3제3항 (수당의 지급 등) 신설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에게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됨(제3 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의3제6항 (수당의 지급 등) 단서 신설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 경우 수당의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7 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결정함	재량규정

		(제6항)	
4	안 제8조의8(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신설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또는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음(제1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1	안 제7조제11항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신설	0	—
2	안 제7조의3제3항 (수당의 지급 등) 신설	0	—
3	안 제7조의3제6항 (수당의 지급 등) 단서 신설	×	수당의 지급액의 인상 규모, 인상 시기 등과 관련하여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된 것으로 해석하고 추계에서 제외함
4	안 제8조의8(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신설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배우자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승계하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수송시설 이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고엽제후유의증의 배우자 관련 자료의 부재로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을 적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 지원의 경우,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기 사망하여 제적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함
- 고엽제 수당의 배우자 승계의 경우, 개정안 부칙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6년 이후 사망자부터 배우자에게 고엽제수당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2024.11월 179명)는 평균 연령 46세로 추계기간 동안 사망인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엽제 수당 수급권 배우자 승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서 제외함
-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중 버스지원의 경우, 2022년까지는 버스연합회 추계자료를 토대로 산출하였으나, 2023년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으로 민영버스 실제 이용량이 산출되어 실제이용액을 전액 보조하기로 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아닌 2023년 국가보훈부가 지급해야 할 정산 금액 기준 1인당 이용지원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3.11월)한 소비자물가상승률¹⁾을 적용하여 산정함
- 개정안에서 수당의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 규정은 수당의 지급액의 인상 규모, 인상 시기 등과 관련하여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된 것으로 해석하고 추계에서 제외함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에 대한 고엽제 수당 지급은 법 시행 이후 수당 수급자가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1)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1%	2.0%	2.0%	2.0%	2.0%	2.0%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 지원(안 제7조제11항)

(1) 대상자 수

- (지원대상) 2023년 기준 고엽제후유의증환자(49,489명), 기 사망하여 제적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49,163명) 및 최근 3년간 연평균 신규등록자(871명)에 무공수훈자의 유배우자율 72.1% 및 무공수훈자 수권배우자 사망률 8.1%를 적용하여 진료대상이 되는 배우자 수를 산정함

[표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존대상자 수	98,652	98,652	98,652	98,652	98,652
신규대상자 수	871	871	871	871	871
배우자 수	56,942	52,958	49,296	45,931	42,839

주: 1) 기존대상자 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49,489명), 기 사망하여 제적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49,163명)를 합산한 수로,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진료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이 유지됨

2) 신규대상자 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신규등록자 수입

3) 배우자 수는 2023년 기준 기존 대상자수에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72.1%)을 곱하여 2023년 배우자 수를 추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배우자수에 무공수훈자 수권배우자 사망률(8.1%)을 적용하고 신규대상자 871명에 유배우자율 72.1%를 적용한 신규진입자 수를 합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진료단가) 진료단가는 보훈병원 60% 감면대상자의 2023년 진료단가에 최근 3년간 진료단가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진료단가를 추정

[표 3] 보훈병원 감면대상자(60%) 진료단가: 2023년

(A) 진료비(천원)			(B) 진료연인원(명)			(B)/(A) 진료단가(원)		
입원	외래	약제	입원	외래	약제	입원	외래	약제
6,673,547	16,423,687	30,780,785	169,441	631,730	631,730	39,386	25,998	48,725

자료: 국가보훈부

[표 4] 진료단가 추정: 2026~2030년

(단위: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입원	41,919	42,799	43,698	44,616	45,553
외래	28,657	29,603	30,580	31,589	32,631
약제	53,554	55,268	57,037	58,862	60,7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진횟수는 보훈병원 60% 감면대상자의 2023년 수진횟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5] 보훈병원 감면대상자(60%) 수진횟수: 2023년

(단위: 명, 회)

의료지원 대상자	진료연인원			수진횟수		
	입원	외래	약제	입원	외래	약제
1,308,232	169,441	631,730	631,730	0.1	0.5	0.5

자료: 국가보훈부

- (추계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수에 진료단가와 수진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19억 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의 보훈병원 진료감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입원	239	227	215	205	195	1,081
외래	816	784	754	725	699	3,778
약제	1,525	1,463	1,406	1,352	1,301	7,047
합계	2,579	2,474	2,375	2,282	2,195	11,9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의 배우자 승계(안 안 제7조의3제3항)

(1) 대상자 수

- (지원대상) 2023년 기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인원에 최근 3년간

사망인원 증감률 8.3%와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을 적용하여 신규미망인 발생인원을 추정한 후, 전년도 미망인 수에 무공수훈자 배우자의 사망률 8.1%를 적용하고 신규미망인 발생인원을 적용하여 미망인 누계를 추정

[표 7]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권 승계 배우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고엽제 환자 사망인원	3,290	3,563	3,859	4,179	4,526
신규미망인 발생인원	2,372	2,569	2,782	3,013	3,263
미망인 발생인원 누계	2,372	4,749	7,147	9,581	12,068

주: 1) 고엽제 환자 사망인원은 2023년 사망인원에 최근 3년간 사망인원 증감률 8.3%를 적용하여 추정
 2) 신규미망인 발생인원은 고엽제 환자 사망인원에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1%를 적용
 3) 미망인 발생인원 누계는 2026년 신규미망인 발생인원을 개정안에 따른 최초 수급권 승계 배우자로 가정한 후, 다음연도부터 전년도 미망인 발생인원 누계에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 8.1%를 적용한 후 당해연도 신규미망인 발생인원을 합산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급단가) 2023년 기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평균 월 지급단가에 최근 5년간 연평균가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평균 월 지급단가를 추정

[표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월 지급단가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지급인원(명)	37,382	36,579	35,911	35,250	34,464	-2.0
월지급단가(천원)	452~1,664	475~1,747	489~1,799	513~1,889	541~1,993	-
총지급액(백만원)	277,345	285,067	289,038	296,231	304,727	2.4
평균 월지급단가(천원)	618	649	671	700	737	4.5

자료: 국가보훈부

[표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월 지급단가 추정: 2026~2030년

(단위: 천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증가율
평균 월지급단가	841	879	919	960	1,003	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권 승계 배우자 수에 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084억 6,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배우자 승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급대상(명)	2,372	4,749	7,147	9,581	12,068	-
월 지급단가(천원)	841	879	919	960	1,003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23,939	50,091	78,812	110,370	145,250	408,4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안 제8조의8)

- (지원대상) 2023년 기준 개정안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지원 추가대상자 수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1.1%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지원대상자 수를 추정

[표 11] 수송시설 이용지원 추가대상자 추이: 2019~2023년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감률
대상자수	등외자	12,598	12,635	12,361	12,091	12,041	-1.1
	고엽제후유의증	51,643	51,432	50,931	50,084	49,360	-1.1
	2세환자	128	137	148	161	176	8.3
합계		64,369	64,204	63,440	62,336	61,577	-1.1

자료: 국가보훈부

[표 12] 개정안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지원 추가대상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감률
지급대상	59,567	58,912	58,264	57,623	56,989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급단가) 2023년 기준 전체 수송시설 이용지원 예산 146억 2,000만원²⁾에 전체 수송시설 이용지원 인원 11만 8,76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단가 12만 3,104원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지급단가를 추정

[표 13] 수송시설 이용지원 지급단가 추정: 2026~2030년

(단위: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지급단가	131,409	134,037	136,718	139,452	142,2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수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98억 3,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4]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급대상(명)	59,567	58,912	58,264	57,623	56,989	-
지급단가(원)	131,409	134,037	136,718	139,452	142,241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7,828	7,896	7,966	8,036	8,106	39,8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의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하고,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승계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게 수송시설 이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602억원(연평균 920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2) 국가보훈부의 2023년 수송시설이용지원 예산은 107억 2,900만원이나 2023년부터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으로 민영버스 실제 이용량 산출되며 실제이용액을 전액보조 하기로 하여 미정산액 발생(2023년 3,995백만원)하여, 2023년 예산에 미정산액을 합산하였음

[표 1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보훈병원 의료지원	2,579	2,474	2,375	2,282	2,195	11,906	2,381
고엽제후유의증수당	23,939	50,091	78,812	110,370	145,250	408,462	81,692
수송시설 이용지원	7,828	7,896	7,966	8,036	8,106	39,832	7,966
합계	34,346	60,461	89,153	120,688	155,551	460,200	92,04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2023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에 배우자 등록정보가 있고, 연령 등이 유사한 무공수훈자의 유배우자율, 배우자사망률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